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89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조배숙·곽규택·백종헌

박준태 • 한기호 • 최수진

송석준 · 조경태 · 이만희

조지연 · 최은석 · 김용태

김기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이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소속 상임위원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위원을 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해당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태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해당 형사사법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 사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는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이해충돌 위원의 직무배제)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는 소속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8조의3(이해충돌 위원의 직무
	배제)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관
	으로 하는 위원회는 소속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
	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
	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안건
	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위
	원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다.